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48
----------	------

제출일자: 2017. 5. 11.

제 출 자: 광진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시 매칭사업이었던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이 서울시 지침 변경으로 2015년 12월말에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약제비 지급이 2016년도까지 종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고자 한다.

3. 주요 내용

- 제3조 제3항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 지급 근거”에 관한 조항 삭제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제1조 및 제3조제2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광진구”를 “서울특별시 광진구”로 변경
- 관련 법조문의 변경에 의거, 제1조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제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보건소 진료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방침」
(서울특별시 제637호, 2000. 6. 19)
-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 일몰사업 알림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3559호, 2015. 8. 20)

- 서울시의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이 2015년12월 31일 종료됨
- 그에 따른 시비 보조금 지원 중단 [약제비 미청구분만 2016년 까지 지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홍보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7.2.8.~2.28)결과 : 접수된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를 “「지역보건법」 제25조”로 한다.

제1조 및 제3조제2항제6호 중 “서울특별시광진구”를 “서울특별시 광진구”로 한다.

제2조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광진구</u>		-----		<u>서울특별시 광진구</u>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		-----		
게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		--		「지역보건법」 제25조의 규정에 의
한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		-----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국민건강보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		
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규정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
의한 요양급여비용에 의한다.				-----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5 (생략)		1~5 (현행과 같음)		
6.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u>서울특별시광</u>		6.-----		<u>서울특별시 광</u>
<u>진구가</u>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 의료지		<u>진구</u> -----		
원		-		
7~10 (생략)		7~10 (현행과 같음)		
③ <u>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u>		<u>〈삭 제〉</u>		
<u>를 면제하는 65세이상 노인환자에 대</u>				
<u>한 원외 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u>				
<u>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의 청구</u>				
<u>를 받아 지출한다.</u>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조례 개정으로 인한 새로운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2항의 단서 규정 제1호에 해당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서울시 매칭사업이었던 65세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사업이 서울시 지침 변경으로 2016년부터 종료되었고, 그에 따른 예산 지급도 2016년도까지 종료되어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함에 따라 새로운 예산을 수반하지 않음.

4. 작성자

작 성 자	보건의료과장 임 옥 용
연 락 처	☎ 1940